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4. 작성기준일: 2024년 11월 2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12월 1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파생형]	9485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948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948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AT9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AT992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2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3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8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11.25)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펀드 코드: 94853)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상상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을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인 대표주가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모투자신탁은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e)	납입금액의 0.3%이내	0.26	0.10	0.2832	59	89	121	18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e)	없음	0.56	0.40	0.5833	60	122	187	327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혹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2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8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종류</th> <th rowspan="2">최초설정일</th> <th>최근 1년</th> <th>최근 2년</th> <th>최근 3년</th> <th>최근 5년</th> <th rowspan="2">설정일 이후</th> </tr> <tr> <td>23.06.10 ~ 24.06.09</td> <td>22.06.10 ~ 24.06.09</td> <td>21.06.10 ~ 24.06.09</td> <td>19.06.10 ~ 24.06.09</td>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미징구- 온라인(Ae)</td> <td>2009-06-09</td> <td>8.75</td> <td>5.02</td> <td>-2.89</td> <td>8.12</td> <td>5.84</td> </tr> </tbody> </tabl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6.10 ~ 24.06.09	22.06.10 ~ 24.06.09	21.06.10 ~ 24.06.09	19.06.10 ~ 24.06.0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Ae)	2009-06-09	8.75	5.02	-2.89	8.12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6.10 ~ 24.06.09	22.06.10 ~ 24.06.09	21.06.10 ~ 24.06.09	19.06.10 ~ 24.06.0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Ae)	2009-06-09	8.75	5.02	-2.89	8.12	5.84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비교지수		7.07	3.51	-4.63	6.71	5.03
수익률 변동성		15.39	16.14	15.10	19.22	16.98

(주 1) 비교지수 : KOSPI 2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파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권영훈	1982	책임 (팀장)	8	1,606	3.08	5.08	-3.16	3.37	15년	
이원석	1993	부책임 (대리)	-	-	-	-	-3.16	3.37	3년 4개월	

운용전문인력
(24.11.25 기준)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AI 퀀트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6)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운용역)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수익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 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 또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를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식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투자 대상의 신용 상태가 변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공채가 될 경우의 신용위험은 매우 작습니다. 단, 신용채권의 경우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국내 채권 투자 시 신용위험은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수익자</td><td>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2016년 09월 1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td></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2016년 09월 1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2016년 09월 1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운용관련 자문업자	- 해당사항 없음 -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 조좌
효력발생일	2024년 12월 13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3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 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2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2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년 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 수시공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파생형]	9485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948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948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AT9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AT99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형 (주식파생형)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하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 조좌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파생형]	9485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948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948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AT9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AT99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시	주요내용
2009.06.09	- 최초설정
2014.11.18	- Class C-P1(연금저축), Class C-P2(퇴직연금) 신설
2015.07.31	- Class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삭제
2016.05.03	-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NH-CA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파생형] ->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파생형]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 판매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6.09.12	- 자투자신탁으로의 전환 - 모투자신탁 추가(NH-Amundi 프리미어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운용인력 변경(성기행→김병규, 2016.09.12 변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등)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6.09.30	- 모투자신탁 삭제(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6.11.04	- 모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변경
2017.06.23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12.81% → 11.97%, 3 등급 유지)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계좌 세액공제 변경사항 반영)
2017.11.24	- 운용전문인력 변경(김병규 → 이현열) -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 갱신
2018.06.27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11.97% → 12.75%, 3 등급 유지)
2019.04.29	- 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이현열→김주인)
2019.07.19	- 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김주인→김승철)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2019.08.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12.75%, → 13.21%, 3등급 유지)
2019.09.16	<p>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변경</p>
2020.03.03	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김승철 → 권영훈)
2020.0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및 등급 변경 반영(13.21%→19.56%, 3등급→2등급 변경)
2020.0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조건부매수)추가 -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중 (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 추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2021.05.14	모투자신탁의 파생상품위험평가액 투자제한 인하
2021.0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19.56% → 21.54%, 2등급 유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1.05.07) 반영
2022.0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21.54% → 21.04%, 2등급 유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 - 기타비용 관련 주석 보완 - 적용 법률 변경,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재무상태표 등)
2022.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장준희)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
2023.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21.04% → 17.16%, 2등급 유지)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3.02.20시행) 반영
2024.0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표준편차 → 최대손실예상액) 반영(표준편차 기준 17.16% → 97.5 VaR 기준 33.92%, 2등급 유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4.03.01시행) 반영 -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장준희) 삭제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024.01.25) 반영
2024.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이원석)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 <u>개정사항 반영</u> - 채권평가회사 추가(이지자산평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이란 투자신탁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투자자의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NH-Amundi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02-368-3600 (www.nh-amundi.com)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1) 운용전문인력 (2024.11.25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집합투자 기구 수 (개)
권영훈	1982	팀장	15년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권영훈	- 2020.01~현재	NH-Amundi 자산운용 패시브솔루션본부 AI퀀트팀			
	- 2017.06~2020.01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해외증권실 해외주식직접팀			
	- 2016.01~2017.05	보고펀드 자산운용 해지펀드운용본부			
	- 2009.11~2016.01	KB자산운용 콘트롤판매본부 인덱스운용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이원석	1993	대리	3년 4개월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이원석	- 2024.10~현재	NH-Amundi 자산운용 패시브솔루션본부 AI퀀트팀			
	- 2021.07~2024.10	DB자산운용 콘트롤판매본부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AI퀀트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4.11.25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파생형)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좌)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권영훈	8	1,606	3.08	5.08	-3.16	3.37
이원석	-	-	-	-	-3.16	3.37

주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분류상 2차, 3차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팀운용이지만,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상기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이 운용한 펀드의 평균운용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운용역)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수익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일시	변경 전	변경 후
2014. 04. 01	박제우 <AIT팀장>	성기행 <AIT팀 대리>
2016. 09. 12	성기행 <퀀트운용본부 과장>	김병규 <퀀트&글로벌 솔루션 본부장 >
2017. 11. 24	김병규 <퀀트&글로벌 솔루션 본부장>	이현열 <패시브운용팀 대리>
2019. 04. 29	이현열 < 패시브솔루션본부 대리>	김주인 <패시브운용팀장>
2019. 07. 19	김주인 <패시브운용팀장>	김승철 < 패시브솔루션본부장 >
2020. 03. 03	김승철 <패시브솔루션본부장>	권영훈 <퀀트운용팀장>
2022.12.15	책임: 권영훈 <퀀트운용팀장>	책임: 권영훈 <퀀트운용팀장> 부책임: 장준희 <퀀트운용팀 대리>
2024.07.18	책임: 권영훈 <퀀트운용팀장> 부책임: 장준희 <퀀트운용팀 대리>	책임: 권영훈 <퀀트운용팀장> 부책임: <삭제>
2024.12.13	책임: 권영훈 <퀀트운용팀장>	책임: 권영훈 <AI퀀트팀 팀장> 부책임: 이원석 <AI퀀트팀 대리>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2) 종류형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인터넷 전용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환매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인터넷 전용 <선취판매수수료와 환매수수료가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와 환매수수료가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와 환매수수료가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3 단계 구분(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펀드특성)에 따른 종류형 펀드의 대표적인 차이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p>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p> <p>*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p> <p>*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p> <p>**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2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p>
	수수료 미징구	<p>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p> <p>*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p> <p>*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p> <p>**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2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p>
	수수료 후취	<p>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p>*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p> <p>*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p>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PR)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가 투자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3)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100%이하)을 모두자신탁에 투자합니다. 모두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H-Amundi 프리미어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인 대표주가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모투자신탁	100% 이하	NH-Amundi 프리미어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②법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③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¹⁾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1)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① 및 ③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① 및 ③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2. 금전의 차입	<p>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법 제 235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2) 법 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p>
3.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시행령 제 34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4.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에 대해서는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아래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100%이하)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 NH-Amundi 프리미어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대해서는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는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200 (100%)**

- KOSPI200: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로 가장 널리 알려진 코스피 200 지수는 1994년 6월 15일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의 기초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 시장대표성, 산업대표성, 유동성 등 기준으로 선정된 20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KOSPI200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을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와 동일)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일부 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 새로운 비교지수(벤치마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에서는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투자신탁 내에서 발생하는 적극적인 매매전략이 자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NH-Amundi 프리미어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연관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은 해당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 됩니다. 신탁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식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투자 대상의 신용 상태가 변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공채가 될 경우의 신용위험은 매우 작습니다. 단, 신용채권의 경우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국내 채권 투자 시 신용위험은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 기간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p>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상기 3, 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p>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해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시장위험(VaR)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33.92%**로 시장위험 등급기준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2등급 →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5단계 → 6단계)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5%이하 10%초과
2020.06.24	3등급 →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25%이하 15%초과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최대손실예상액(VaR) 기준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매결산시마다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의 다음 영업일(D+1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로부터 3 영업일(D+2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3) 종류별 모집제한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인터넷 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인터넷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 이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15 시 30 분 이전에 매입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

※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 이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15 시 30 분 이전에 환매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아님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매영업일 공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에 게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펀드간 판매보수가 차등 적용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간에 기준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
 -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채무증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p>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부과시기	매입 시	환매 시	전환 시	환매 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Class Ae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상기의 판매수수료율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주2) 상기 표의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업 자보수	일반사 무관리 회사보 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동종유 형총보 수	합성 총보수 ·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14	0.1	0.01	0.01	0.2600	0.0021	0.2621	0.4600	0.2832	0.07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14	0.4	0.01	0.01	0.5600	0.0021	0.5621	0.9900	0.5833	0.08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개인연금 (C-P1(연 금저축))	0.14	0.3	0.01	0.01	0.4600	0.0018	0.4618	-	0.4829	0.08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퇴직연금 (C-P2(퇴 직연금))	0.14	0.28	0.01	0.01	0.4400	0.0018	0.4418	-	0.4630	0.0808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급,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시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며,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6.09 ~ 2024.06.08]

- 주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콜·대차 또는 대주·현금 등 중개수수료 등 (다만,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환급되는 경우)	5,637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	-

- 상기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6.09 ~ 2024.06.08]
-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6.09 ~ 2024.06.08]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전월말 기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7	85	114	177	36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59	89	121	189	3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8	118	181	315	70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0	122	187	327	7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97	149	259	58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50	101	155	271	6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5	93	142	248	55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47	97	149	260	584

주1)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Ae와 종류 Ce]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2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 Ae]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3%]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별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9월 1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C-P1 가입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p>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800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세액공제	<p>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p>[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p>
연금수령시 과세	<p>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분리과세한도	연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C-P2 가입자에 한함)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NH-Amundi 프리미어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인 대표주가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주식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60% 이상 <단, 주식에 60% 이상>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의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②채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1- 이상인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것
⑤수익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법 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다만, 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⑥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집합 투자재산(순자 산총액)의 20%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 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⑦증권의 대여 ²⁾ 및 차입 ³⁾		대여의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차입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⑧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⑩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 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증권의 대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2. 동일종목 투자제한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② 파생결합증권 ③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④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⑥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⑦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그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p>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p>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을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하는 행위</p> <p>라.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서, 동일종목의 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집합투자증권에 의 투자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지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5. 파생상품거래	<p>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라.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6. 금전의 차입	<p>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① 법 제 235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② 법 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p>

	<p>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p>
7.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시행령 제 34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8.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9.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p>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1) 투자대상에서 ⑤~⑧, (2) 투자제한에서 2~4 및 5 의 가~다의 투자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나. (2) 투자제한에서 2 의 본문, 4 의 가~나 및 5 의 가~다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다. 4의 '가' 또는 '나'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3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 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③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p>라.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 17 조제 1 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p>

경우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구성

- 1) KOSPI200 주가지수를 복제한 주식 Basket, KOSPI200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ETF)과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주식파생상품형 투자신탁으로 장내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상기 1) 의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과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투자전략의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 초과수익 창출을 위한 기본 전략

- 1) 주식 Basket, ETF,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의 가격을 비교하여 저평가 자산으로 교체매매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신탁재산으로 주식 현물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KOSPI 200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는 경우 지수변경과 동시에 주식 Basket 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등의 요인으로 오히려 KOSPI200 주가지수의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달성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매시점을 조절하여 KOSPI200 주가지수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2) 위험관리

주식현물,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과 같은 장내파생상품을 사용하여 KOSPI200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며 현선물 차익거래 등의 전략으로 부가적인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펀드로서 KOSPI200 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위험관리의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200 (100%)
- KOSPI200: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로 가장 널리 알려진 코스피 200 지수는 1994년 6월 15일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의 기초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 시장대표성, 산업대표성, 유동성 등 기준으로 선정된 20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KOSPI200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을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비교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주)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익구조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위험회피 외의 목적(투자목적)으로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의 운용성과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5기(2023.06.09 - 2024.06.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4기(2022.06.09 - 2023.06.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3기(2021.06.09 - 2022.06.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단위 : 원]

항 목	재무상태표		
	제 15기 (2024.06.08)	제 14기 (2023.06.08)	제 13기 (2022.06.08)
운용자산	7,453,688,088	7,065,842,167	7,003,924,523
증권	7,432,762,804	7,044,829,051	6,983,616,51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0,925,284	21,013,116	20,308,01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70,118	11,444,172	6,148
자산총계	7,453,858,206	7,077,286,339	7,003,930,67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56,732	11,453,222	0
부채총계	156,732	11,453,222	0
원본	5,749,726,948	5,898,680,350	5,734,217,773
수익조정금	-27,399,122	38,475,480	149,565,421
이익잉여금	1,731,373,648	1,128,677,287	1,120,147,477
자본총계	7,453,701,474	7,065,833,117	7,003,930,671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단위 : 원, %]

항 목	손익계산서		
	제 15기 (2023.06.09 - 2024.06.08)	제 14기 (2022.06.09 - 2023.06.08)	제 13기 (2021.06.09 - 2022.06.08)
운용수익	735,493,277	-21,321,055	-1,380,489,987
이자수익	629,860	523,458	127,112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734,863,417	-21,844,513	-1,380,617,099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735,493,277	-21,321,055	-1,380,489,987
매매회전율	213.51	282.90	173.73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주식의 투자 비중만을 감안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주2) "가. 요약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가. 요약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3.06.09 - 2024.06.08)			전기(2022.06.09 - 2023.06.08)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27,241	5.3935	0.0198	33,304	11	0.0333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175	0.0344	0.0197	534	0	0.0208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3,561	0.1959	0.0055	8,028	0	0.005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378	0.0130	0.0034	4,330	0	0.002
합계	31,355	5.6368	0.018	46,197	12	0.0253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상기의 거래비용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382,300	12,963	409,675	14,291	6,693	213.51

주1)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기준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분기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분기별 누적 평균 매매회전율을 공시한 자료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주식의 투자 비중만을 감안하여 산출되었습니다.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가. 재무상태표

투자신탁명 :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단위:원]

과 목	제15기(2024.06.08)		제14기(2023.06.08)		제13기(2022.06.08)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925,284		20,925,284		21,013,116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타자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70,118		11,444,172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3,699					
4. 미수배당금				13,856		
5. 기타미수입금	156,419					
6. 기타자산				11,430,316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7,453,858,206			7,077,286,339	
부 채						
운용부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타부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56,732		11,453,222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1,453,222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56,732			11,453,222	
자 본						
1. 원본	5,749,726,94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5,898,680,350		
3. 이월잉여금	1,703,974,526					
(발행좌수 당기: 5,749,726,948 좌)						
전기: 5,898,680,350 좌			1,731,373,648			
전전기: 5,734,217,773 좌)			-27,399,122			
(기준가격 당기: 1,270.23 원)						
전기: 1,173.53 원						
전전기: 1,192.81 원)						
자 본 총 계		7,453,701,474			7,065,833,11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453,858,206			7,077,286,339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나.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단위:원]

과 목	제15기(2023.06.09-2024.06.08)		제14기(2022.06.09-2023.06.08)		제13기(2021.06.09-2022.06.08)	
	금 액		금 액		금 액	
운용수익						
1. 투자수익						
1. 이자수익	629,860	629,860	523,458	523,458	127,112	127,112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 지분증권매매차익		794,177,785		525,933,930		510,105,575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71,006,300		366,581,239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159,352,691		510,105,575	
7. 기타거래차익	223,171,485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 지분증권매매차손		59,314,368		547,778,443		1,890,722,67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59,314,368		547,778,443		40,920,295	
운용비용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35,493,277		-21,321,055		-1,380,489,98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27917949		-0.003614547		-0.24074599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6.09 - 2024.06.08	59	69	22	27	24	29	57	75
2022.06.09 - 2023.06.08	57	68	35	39	34	36	59	71
2021.06.09 - 2022.06.08	48	71	36	49	27	37	57	70

(주1) 2023.06.09 - 2024.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9,691,925좌/126,632,105원

(주2) 2022.06.09 - 2023.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5,183,288좌/135,171,203원

(주3) 2021.06.09 - 2022.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6,875,137좌/115,554,082원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6.09 - 2024.06.08	27	31	17	20	19	22	25	32
2022.06.09 - 2023.06.08	25	30	29	31	28	29	27	31
2021.06.09 - 2022.06.08	17	25	28	37	20	27	25	30

(주1) 2023.06.09 - 2024.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0,717,414좌/50,695,215원

(주2) 2022.06.09 - 2023.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3,066,967좌/61,064,479원

(주3) 2021.06.09 - 2022.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4,369,418좌/52,108,914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6.09 - 2024.06.08	11	14	1	2	2	2	10	15
2022.06.09 - 2023.06.08	12	16	2	2	3	3	11	14
2021.06.09 - 2022.06.08	11	18	2	3	0	1	12	16

(주1) 2023.06.09 - 2024.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8,159,776좌/25,820,839원

(주2) 2022.06.09 - 2023.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0,281,284좌/26,688,938원

(주3) 2021.06.09 - 2022.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0,033,935좌/26,871,689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6.09 - 2024.06.08	18	24	3	4	2	3	19	28
2022.06.09 - 2023.06.08	17	23	3	4	2	2	18	25
2021.06.09 - 2022.06.08	17	28	5	8	5	8	17	23

(주1) 2023.06.09 - 2024.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5,133,902좌/50,116,051원

(주2) 2022.06.09 - 2023.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5,906,207좌/47,417,78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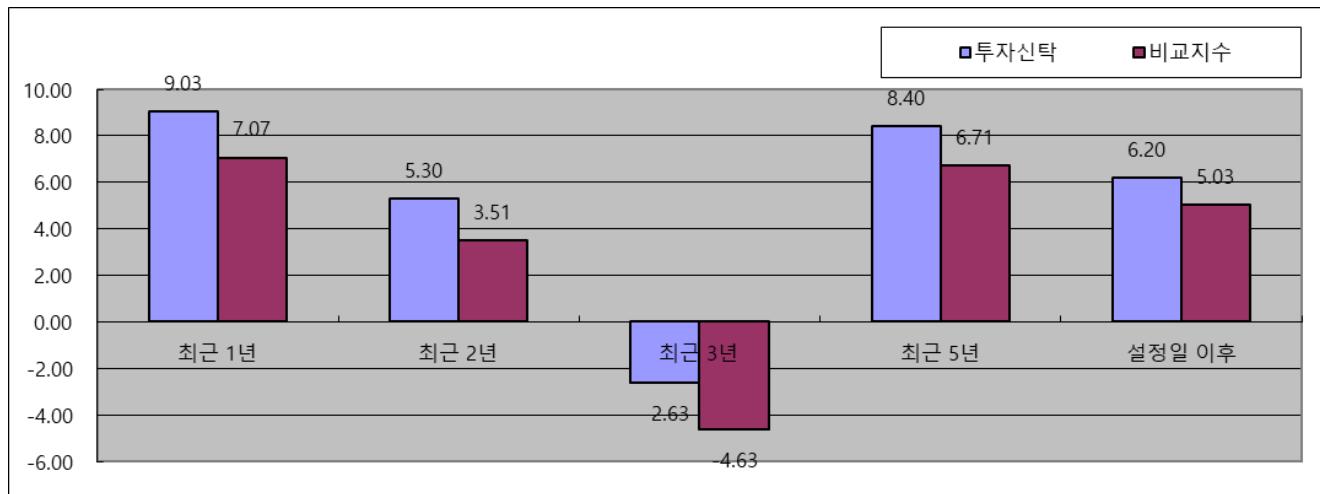
(주3) 2021.06.09 - 2022.06.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7,161,537좌/36,573,479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6.10 ~ 24.06.09	22.06.10 ~ 24.06.09	21.06.10 ~ 24.06.09	19.06.10 ~ 24.06.09	09.06.09 ~ 24.06.09
투자신탁	9.03	5.30	-2.63	8.40	6.20
비교지수	7.07	3.51	-4.63	6.71	5.03
수익률변동성(%)	15.39	16.14	15.10	19.22	16.98
수수료선취-온라인(Ae)	8.75	5.02	-2.89	8.12	5.84
비교지수	7.07	3.51	-4.63	6.71	5.03
수익률변동성(%)	15.39	16.14	15.10	19.22	16.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연금저축))	8.53	4.82	-3.08	7.91	5.64
비교지수	7.07	3.51	-4.63	6.71	4.26
수익률변동성(%)	15.39	16.14	15.10	19.22	16.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8.55	4.84	-3.06	7.93	6.04
비교지수	7.07	3.51	-4.63	6.71	4.64
수익률변동성(%)	15.39	16.14	15.10	19.22	16.54

주1) 비교지수 : (1 * [KOSPI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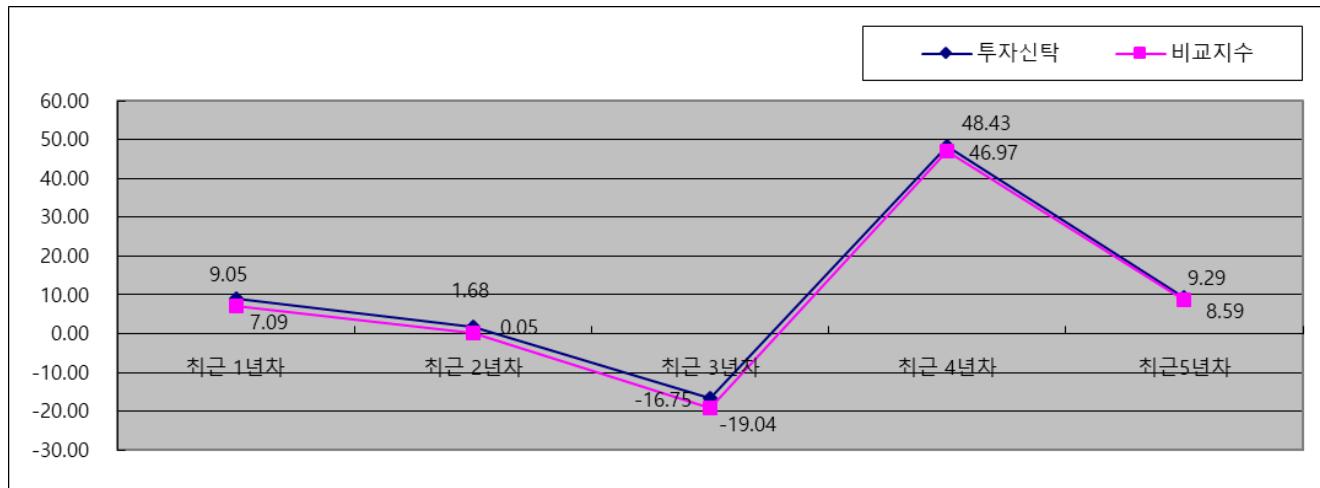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3.06.10 ~ 24.06.09	22.06.10 ~ 23.06.09	21.06.10 ~ 22.06.09	20.06.10 ~ 21.06.09	19.06.10 ~ 20.06.09
투자신탁	9.05	1.68	-16.75	48.43	9.29
비교지수	7.09	0.05	-19.04	46.97	8.59
수수료선취-온라인 (Ae)	8.77	1.42	-16.98	48.05	9.01
비교지수	7.09	0.05	-19.04	46.97	8.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8.56	1.22	-17.15	47.78	8.80
비교지수	7.09	0.05	-19.04	46.97	8.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8.58	1.24	-17.13	47.80	8.82
비교지수	7.09	0.05	-19.04	46.97	8.59

주1) 비교지수 : (1 * [KOSPI2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을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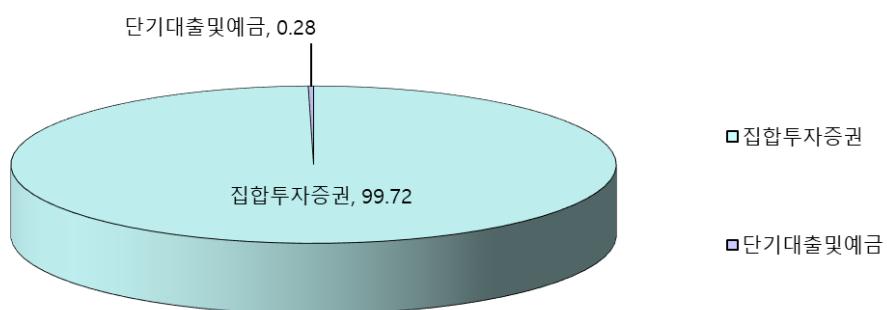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을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을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4.06.08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74	0	0	0	0	0	0	0	75
	(0.00)	(0.00)	(0.00)	(99.72)	(0.00)	(0.00)	(0.00)	(0.00)	(0.00)	(0.28)	(0.00)	(100.00)
합계	0	0	0	74	0	0	0	0	0	0	0	75
	(0.00)	(0.00)	(0.00)	(99.72)	(0.00)	(0.00)	(0.00)	(0.00)	(0.00)	(0.28)	(0.00)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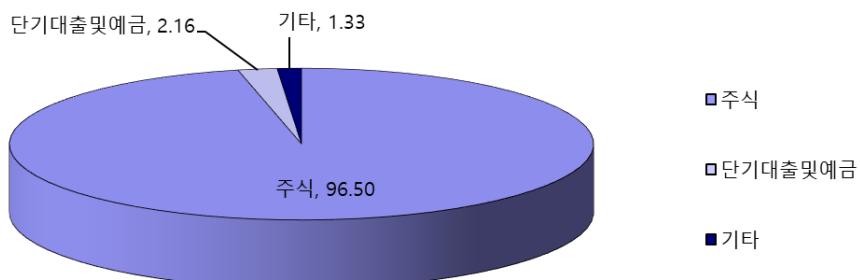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NH-Amundi 프리미어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2024.06.08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65	0	0	0	0	0	0	0	0	8	5	378
	(96.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6)	(1.33)	(100.00)
합계	365	0	0	0	0	0	0	0	0	8	5	378
	(96.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6)	(1.33)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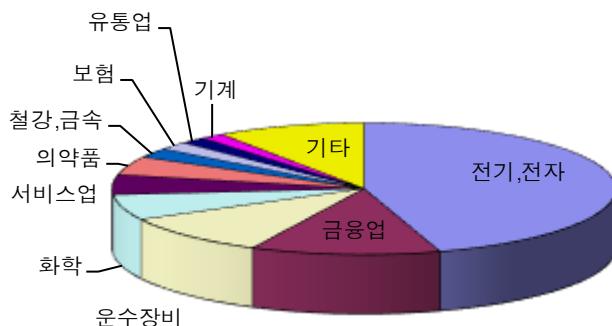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2024.06.08 현재 / 단위 : 억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165	45.13
2	금융업	44	12.14
3	운수장비	36	9.97
4	화학	23	6.27
5	서비스업	18	4.90
6	의약품	17	4.53
7	철강,금속	9	2.39
8	보험	7	1.96
9	유통업	6	1.64
10	기계	5	1.51
11	기타	35	9.57
합 계		365	100.01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 현황

[2024.06.08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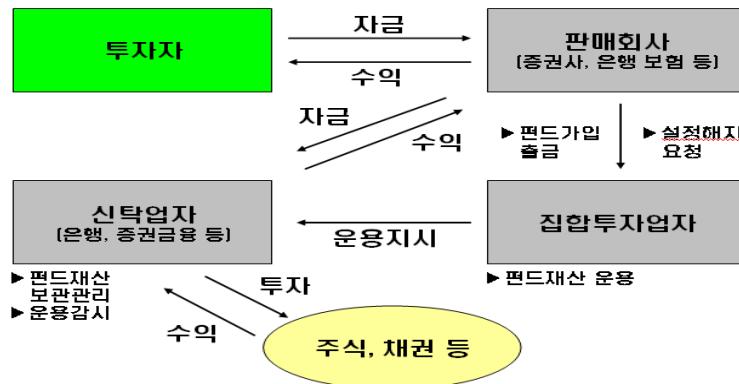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개별주식선물매입	4	50.05
KOSPI200선물매입	4	49.95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NH-Amundi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10층)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회사연혁	<p>2002.04 농협과 CAAM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체결</p> <p>2003.01 NH농협금융지주와 Amundi의 합작법인 설립 ※ Amundi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 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자회사, 2010. 01 CAAM에서 Amundi로 사명 변경</p> <p>2003.03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p> <p>2003.04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p> <p>2006.09 국내 대형 연기금 SRI펀드 운용사 선정</p> <p>2007.08 NH-CA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p> <p>2009.01 수탁고 10조원 돌파</p> <p>2009.06 국내최초 공모 레버리지 펀드 출시</p> <p>2010.01 'Amundi자산운용'으로 재출범 (모회사인 Credit Agricole과 Societe Generale의 자본출자)</p> <p>2010.01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9년 '최우수 금융상품상' 수상</p> <p>2012.03 'NH농협금융지주'로 새롭게 출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7개의 금융자회사로 구성)</p> <p>2015.08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p> <p>2015.10 대체투자 사업 진출</p> <p>2016.05 NH-CA자산운용(주)에서 NH-Amundi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p> <p>2017.07 모회사인 Amundi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완료 : 자산규모 1,600조원의 글로벌 Top8 운용사로 발돋움</p> <p>2018.02 공무원연금공단 '사회책임투자형' 우수운용사 선정</p> <p>2018.03 HANARO ETF 출시</p> <p>2018.11 사모 헤지펀드 출시</p> <p>2018.1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p> <p>2019.02 KG제로인 2019 대한민국펀드어워즈 '대상' 수상</p>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2019.02	매일경제 2019 매경증권대상 '펀드부문 대상' 수상
	2022.01	수탁고 50조원 돌파
자본금		400억
주요주주		농협 60%, Amundi 40%

나.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 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 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항 목	'23. 12말	'22. 12말	항 목	'23. 12말	'22. 12말
현금 및 예치금	73,831	70,578	영업수익	86,309	85,481
유가증권	51,474	49,515	영업비용	50,796	49,442
유형자산	1,369	1,221	영업이익	35,513	36,039
기타자산	23,521	21,906	영업외수익	517	63
자산총계	150,195	143,220	영업외비용	361	328
예수부채		-	법인세	9,112	9,189
기타부채	20,600	20,896	당기순이익	26,555	26,585
부채총계	20,600	20,896			
자본금	40,000	40,000			
이익잉여금	89,595	82,324			
자본총계	129,595	122,324			

라. 운용자산 규모

[2024.11.25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25,708	92,274	5,170	0	22,265	50,579	0	10,080	66,921	6,534	144,167	423,70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 길 20 02-756-0506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com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02-2180-0400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피엔아이	에프엔자산평가	<u>이지자산평가</u>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빌딩 11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u>서울시 영등포구</u> <u>여의공원로 101</u>
연락처	02-3215-1400	02-2251-1300	02-398-3900	02-721-5300	<u>02-785-1410</u>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2000. 6. 16	2011. 6. 9	<u>2020.6.19</u>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u>www.egap.co.kr</u>

(2)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 20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2)-1.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탁계약서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일로 역산하여 365 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 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
2. 보상기간: 365 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 135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 · 제 2 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 ④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 ⑤ 법 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법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9)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록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제 81 조제 1 항제 1 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의미합니다.)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아래와 같은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②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③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표에 관한 사항

1. 계약금액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 :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옵션가격(프리미엄)에 계약수를, 풋옵션 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콜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중 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 다만,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옵션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는 기초자산가격에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으로 한다.

라. 그 밖의 거래: 상기 가~다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상기 가~다의 방법을 준용하여 사정한다.

마. 상기 가~라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레버리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서술식으로 요약

- 3.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변동은 시나리오법에 따른 옵션위험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산정, 이 경우 "옵션 위험액"은 "손익구조변동"으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은 "파생상품"으로 각각 본다.**
- 4.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최대손실 예상금액(VaR)):**
- 최대 손실예상금액(VaR)은 보유포지션의 시장가치 \times 신뢰구간에 따른 표준편차의 배수 \times 포지션의 변동성(표준편차) $\times \sqrt{\text{보유기간}}$ 으로 산정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0 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축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만, 10 영업일보다 짧은 보유기간을 사용하여 최대손실 예상금액(VaR)을 산정한 후 이를 10 영업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 영업일간의 최대 손실예상금액(VaR)은 1 일간의 최대손실예상금액(VaR) $\times \sqrt{10}$ 으로 산정한다.
- 나.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 년 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 개월에 1 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 다.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간편법 또는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시행령 제 84 조)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p>1) 선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p>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 어 풀 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기준가 산정 통화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클래스별로 달리 적용하는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이자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및 추가 불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NH-Amundi e-프리미어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용 어	내 용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p>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p> <p>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p>
참조지수	<p>비교지수와는 다르게 해당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레버리지효과	<p>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p> <p>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p>